

기숙사 운영 규정

제정 2004년 3월 1일
개정 2014년 3월 1일
개정 2018년 1월 23일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명칭): 남원제일고등학교에 설립된 학생 기숙사를 “생활관”이라 칭한다.
- 제2조(목적): 이 규정은 생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기숙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운영): 생활관은 학교장이 총괄 운영 감독한다.
- 제4조(정원): 본 기숙사의 정원은 70명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
- 제5조: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의해 운영한다.
- 제6조: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은 생활관 운영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7조(이용제한): 기숙사의 숙식 및 시설물은 기숙사 운영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교육의 목적에 부합되고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은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 2 장 운영위원회, 사감

- 제8조(설치):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제9조(구성):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(1) 위원장: 교장
- (2) 부위원장: 학운위원장, 교감
- (3) 위원: 학교운영위원(4명)
- (4) 삭제

- 제10조(기능):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.

- (1) 생활관 운영 규정의 개정
- (2) 입사, 퇴사의 심사(단, 입사희망자가 수용시설을 초과할 경우)
- (3) 입사생 부담금에 관한 사항
- (4)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(5) 기타 학교장 및 사감이 제청한 사항

- 제11조(회의):

- (1)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(2) 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
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사감): 사감은 1명, 지도교사(교무부장교사) 1명을 두어 운영한다.

제13조: 사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

- (1) 사감은 학교장의 명에 따라 기숙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한다.
- (2) 생활관운영 규정과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 및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.
- (3) 입사생의 생활지도, 자율학습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- (4) 사감은 운영 결과를 필요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- (5) 기숙사내에서 일어난 제반사항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.

제 3 장 입사 및 퇴사

제14조: 생활관 입. 퇴사는 선발기준 및 퇴사처분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.

제15조: 생활관 입사 학생 선발 기준과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

- (1) 선발기준
 - 1) 통학거리
 - 2) 삭제
 - 3) 사회적 배려대상자
 - 4) 삭제
 - 5) 삭제
- (2) 입사 등록구비 서류
 - 1) 입사원서 1부
 - 2) 삭제
 - 3) 서약서 1부
 - 4) 결핵 검진표 1부

제16조(입사결격사유)

- (1) 장기선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- (2) 사직을 위반하여 퇴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- (3) 전염병 감염자 또는 보유자(격리를 요하는 각종 질환자)
- (4)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고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

제17조(퇴사처분)

다음 사항은 사감의 제충에 의해 위원장이 퇴사 처분을 할 수 있다.

- (1) 정기선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
- (2) 휴학자
- (3) 전염병 감염자
- (4) 기숙사비 납부를 2개월 이상 체납한 자
- (5) 입사생활 중 음주, 흡연, 도박 등의 행위로 질서를 문란케 한 자

- (6) 제28조의 생활수칙을 위반한 자
- (7) 특별한 사유로 퇴사를 원할 때는 퇴사 신청자와 담임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8조(퇴사절차)

- (1) 퇴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숙사 퇴사원 및 담임교사 의견서를 사감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(2) 기간의 만료 또는 원에 의하여 퇴사하고자 하는 자나 퇴사 처분을 받은자는 공영비품을 반납하고 퇴사하여야 한다.
- (3) 퇴사를 명받은 학생은 즉시 퇴사하여야 하고, 퇴사 전에 해당 호실을 사감에게 점검을 받아 원상 회복해야 한다.

제19조: 삭제

제20조: 학생의 방 배정은 실별 배치계획에 의거 사감이 배정한다.

제 4 장 학생 자치회 및 학부모회

제21조: 생활관 내의 학생들의 자율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 자치회를 둔다.

- (1) 자치회는 각실 대표로 하며 사생장, 생활부장, 총무부장, 봉사부장 등의 임원을 둔다.
- (2) 자치회는 생활 반성과 건의 사항을 사감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한다.
- (3) 임기: 1년
- (4)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,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22조: 생활관 학생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학생 생활을 돋기 위해 학부모회를 둔다.

- (1) 학부모회는 생활관 입사 학생의 학부모로 구성하되 생활관 개선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에 건의 할 수 있다.
- (2) 학부모회는 필요시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 5 장 생활관 수용 경비

제23조: 생활관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.

- (1) 기숙사비는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- (2) 기숙사비는 월납으로 하며, 전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- (3) 납부한 기숙사비는 퇴사를 이유로 잔여일수가 7일 이내일 때는 환불하지 아니하며, 학교장이 허가한 결식 일수가 연속 7일 이상일 때는 다음 달 식비에서 공제한다.(퇴사시점 기준 정산 원칙)

- (4) 기숙사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생 공동의 소모품, 식사 조리에 필요한 인건비, 재료비 및 광열비 등에 사용한다.

제24조(경리): 기숙사의 예. 결산은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운영한다.

제25조(물품검수): 주.부식 및 기타 물품의 검수는 사감 및 영양사가 입회한다.

제26조(손해배상): 기숙사 시설 및 설비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한 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.

제27조(예산과 결산)

- (1) 사감은 회계연도 개시 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(2) 행정실은 회계연도 경과 후 지체없이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(3) 기숙사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.

제 6 장 학생 생활 수칙

제28조: 질서 있고 명랑한 기숙사 생활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기숙사 운영이 되기 위해 생활수칙을 정하여 준수토록 한다.

- (1) 생활수칙은 사감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- (2) 일과표 및 보다 상세한 생활 수칙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제 7 장 외출 및 외박

제29조: 전체 귀가는 공휴일, 방학 등 학교 휴무기간으로 하며 필요시 사감은 이를 통제할 수 있다.

- (1) 외박은 통제하나 학부형의 연락으로 사감이 판단 학락한다.
- (2) 규정된 시간에 귀사해야 하며 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사감에게 전화로 신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.

부칙

1.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 1. 생활관 일과표

시간	구분
06:30~	기상
07:00~	아침식사
08:00~	등교
16:30~	하교
17:30~	저녁식사
20:00~	청소 및 인원점검
22:30~	전체 소등 및 취침

별표 2. 생활관 생활수칙

1. 주요 일정은 안내방송으로 진행한다.
2. 외출시 귀가시간은 20시까지로 한다.
3. 외출시 가까운 곳이라도 외출일지에 기입한다.
4. 샤워실 및 세탁실은 22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
5. 부득이 외출시간을 넘기거나 외박시 무조건 부모님의 선 허락이 있어야 하며 외박은 한 달에 한번만 가능합니다.(경조사제외)
6. 생활관생들은 금요일 아침 8시부터 일요일 17시까지는 재입소 불가합니다.
7. 일요일은 석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
8. 식중독 및 위생문제로 인하여 기숙사내에 조리음식은 반입금지입니다.
9. 생활관 전체 점호는 매주 목요일 진행한다.
10. 생활관 생활시 건의나 상담은 사감에게 신청한다.